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추가〉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2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추가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생략)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u>장애인</u>	4. ----- ----- ----- <u>장애인</u> <u>및 그 보호자</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② 유치원의 유아, ③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④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¹⁾에 대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과 교육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²⁾.

이를 근거로 소방청은 유아, 초·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³⁾, 해마다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약 1,065만 명이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였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1) 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현황은 [참고 1] 참조

2) 참고로, 소방안전교육훈련은 해당 시설의 장 등이 ①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② 관할 소방서에 유선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하고 관할 소방서와 교육신청자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 후 시행하는데,

교육 대상자가 소방안전체험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체험을 하거나 소방안전강사가 해당 시설이나 교육장을 방문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한 체험 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됨.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전국 119체험관, 소방서 접속 및 검색이 가능하며, 접속방법은 다음과 같음.

☞ 소방청 홈페이지 - 안전정보 - 체험안내 - 지역별 체험관 현황(연계된 홈페이지 접속 후 예약)

☞ 소방청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일반현황 - 전국소방기관안내 - 관할지역 소방서 검색 후 유선으로 예약접수

*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 별도로 유선을 통하여 협의할 필요 없음.

(자료: 소방청)

※ 소방안전강사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하며, 강사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참조

3) 구체적으로,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 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장애인안전관리에 관한사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시설의 장이 주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2023년⁴⁾에는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 참여가 2022년 대비 5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소방안전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유아	초등	중고등	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2020	2,270,338	210,072	632,574	544,188	574,451	263,615	34,964	10,474
2021	5,059,649	679,688	1,334,813	1,040,980	1,310,243	554,565	86,462	52,898
2022	6,510,842	1,119,398	1,714,148	1,234,164	1,676,548	543,565	133,999	89,020
2023	9,234,640	1,423,576	2,274,779	1,485,733	3,077,507	574,794	204,981	193,270
2024	10,654,354	1,792,599	2,551,173	1,437,119	3,689,796	741,943	226,466	215,258

(자료: 소방청)

한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0%이나⁵⁾ 같은 해의 화재사상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9.5%로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사상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이 법률에 규정된 2023년⁶⁾ 이후 화재사상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4)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5) ('18년) 2,585,876명 → ('19년) 2,618,918명 → ('20년) 2,633,026명 → ('21년) 2,644,700명 → ('22년) 2,652,860명 → ('23년) 2,586,024명

6)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나타남(화재사상자 중 장애인 비율 : ‘22 10.3% → ’23 10.2% → ‘24 9.5%).

<최근 3년간 화재사상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인구수		화재현황		사망		부상		비고		
											계	%
‘22	합계	51,672,569	100.0	2,669	100.0	342	2,327					
	장애인	2,652,860	5.1	284.3	10.3	105	169					
	비장애인	49,019,709	94.9	2,484.7	89.7	237	2,158					
‘23	합계	51,712,619	100.0	2,130	100.0	276	1,854					
	장애인	2,586,024	5.0	227.2	10.2	84	133					
	비장애인	49,126,595	95.0	2,002.8	89.8	192	1,721					
‘24	합계	51,774,521	100.0	2,501	100.0	307	2,094					
	장애인	2,586,024	5.0	237.5	9.5	71	157					
	비장애인	49,188,497	95.0	2,263.5	90.5	236	1,937					

※ ‘24년도의 통계수치(‘24.10.31. 이후)는 조사 일정에 따라 소폭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2024.12.31.기준 / 인구통계-KOSIS,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참고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는 배우자(37.8%), 부모(21.2%), 자녀(18.5%) 등 가족의 비율이 전체의 77.5%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장애인의 72.9%가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보호자 관련 현황 >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구 분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배우자	37.8	49.5	41.9	42.2	48.1	36.4	4.8	-	13.6	57.7	47.5	64.6	69.4	44.7	53.7	27.2
부모	21.2	3.3	14.5	3.7	4.2	40.8	74.1	90.4	43.8	5.4	17.1	1.9	20.5	10.9	4.2	44.1
자녀 (며느리, 사위)	18.5	25.2	14.7	25.4	30.4	10.9	1.3	-	5.7	19.5	14.9	18.4	4.7	22.7	17.4	5.7
인척	5	2.4	4.6	2.6	2	4.2	11.1	3.9	20.8	3.4	2.8	-	-	5.8	1.5	13.2
친구/이웃	1.2	1.7	1	3.1	0.5	2.3	1.3	-	1.4	-	-	0.4	-	-	-	-
간병인	1.6	1	3.9	1.2	1.2	0.5	0.3	-	4.2	3	2.5	-	-	8.3	2	2.6
요양보호사	9.7	12.7	12.3	10.8	12.5	2.9	1.3	-	3.9	9.1	13.7	6.1	5.5	7.6	21.2	3.4
기타	4.8	4.2	7.1	11.1	1	2.2	5.8	5.7	6.6	2	1.6	8.5	-	-	-	3.6

□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예	72.9	68.5	71.9	60.5	70.3	84.5	86.1	94.4	68.1	80.2	79.6	73.9	94.5	78.2	68.3	83.0
아니오	27.1	31.5	28.1	39.5	29.7	15.5	13.9	5.6	31.9	19.8	20.4	26.1	5.5	21.8	31.7	17.0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⁷⁾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제58조제1항제2호의2는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함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사상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점,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법률에 명시한 이후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아졌고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사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현재 소방청이 실시하는 장애인 안전교육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의 안내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를 포함하는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소방안전 확보 요령과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방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교육 내용(예시)>

대 상	교 육 주 제
유아 안전 교육	○ 교육과정을 화재 및 재난안전, 생활 및 교통안전의 2개 영역으로 대 분류하고, 다시 활동주제에 따라 2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제별 내 용에 따라 교육 -화재 및 재난 안전: · 화상원인, 화상 응급처치, 화재시 위험행동, 화재 시 연기를 피하는 방법 등 -생활 및 교통 안전: · 놀잇감 안전, 실내 안전, 놀이터 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교통수단 이용 안전 등
학교 안전 교육	○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자연재해의 5개 영역을 대 분류하여 중분류 14개, 학년에 따른 소분류 32개로 나누어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체계를 완성하는 등 연차별로 성인에 이르 기까지 소방안전 교육체계를 갖춘. - 생활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미아사고 안전 -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대중교통 안전 등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약물중독, 사이버중독 - 재난안전: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 - 직업안전: 직업 안전의식,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등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등

8) 장애인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참조

대상	교육주제
장애인 안전 교육 ⁸⁾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표준실무 교재이며, 생애주기별, 교육영역별로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정리하였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별 교육방법과 상황별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
	○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영상교재 : 재난으로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구(自救)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4대 교육주제(화재대피·예방, 응급처치, 아파트 화재대피) 중심 안전교육용 자료 및 대국민 행동요령 영상교재로 4편 제작 * 외국어(베트남, 중국어, 영어) /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교재 : ‘장애인용 119안전교육 교재 ^{23년} ’ 개발 배포를 통한 장애유형별 화재대피, 대응방법 등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교재 보급 * 장애유형: 지체, 시각 ^{점자} , 청각 ○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 신체적·환경적 한계로 체험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체험교육이 가능한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플랫폼으로 교육 실시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

먼저, 현행법에 예시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교육·훈련 대상과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영유

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⁹⁾에서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교육·훈련 대상은 예시 규정이라 보이는데, 소방교육·훈련 대상의 예시를 법률에 상세히 나열하는 경우 소방교육·훈련 대상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소방교육·훈련 대상의 예시를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영유아나 학생 역시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거나 교사 등의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그 보호자를 소방교육·훈련 대상의 예시로 명시하는 것이 조문 내용 간의 균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 밖에, 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소방청이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이 마련되어야지만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9) 소방교육·훈련 신청 방법은 각주 2) 참조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거주시설	직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2022	3,866	1,532	792	1,528	18	18
2023	3,913	1,529	811	1,536	18	19

(자료: 소방청)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의 취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자”를 주로 ‘부모, 배우자, 후견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¹⁰⁾,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의 부

10)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교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 등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 등이 장애인을 보호·보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장애인의 법정 보호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화재안전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¹⁾).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장애인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보호자 등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은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장애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11) 소방청은 실제로 많은 장애인이 시설과 가정을 오가며 생활하는 혼합형 돌봄 구조에 놓여 있는데, 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활동할 때에는 시설 내 종사자 등이 장애인을 지원하고 외출 등 시설 밖 활동 시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직접 동행하거나 안전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참고 1

장애인 관련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3.12.31.기준)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합계(개소)		거주시설	직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생산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22년	3,866	1,532	792	1,528	18	18
'23년	3,913	1,529	811	1,536	18	19

□ 장애인 거주시설별 현황

구분(개소/명)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유아	단기*	공동**
'22년	시설수	1,532	26	15	7	307	252	9	165	751
	이용인원	27,946	882	562	177	10,859	10,450	332	1,871	2,813
'23년	시설수	1,529	25	15	7	308	252	9	167	746
	이용인원	27,352	849	557	172	10,689	10,220	324	1,735	2,806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계(개소)		장 애 인 복 지 관	주 보 간 호	체 시 육 설	생 활 지 동 원 터	수 통 역 터 어 센	수 시 련 설	점 도 서 관	도 출 설 서 관	및 시 비 고
'22 년	1,528	263	840	31	165	204	1	22	2	
'23 년	1,536	266	849	30	165	206	-	19	1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구분(개소/명)		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비고
'22년	시설수	792	70	682	40	
	현 원	20,819	2951	17017	851	
'23년	시설수	811	69	704	38	
	현 원	21,225	2,910	17,437	878	

참고 2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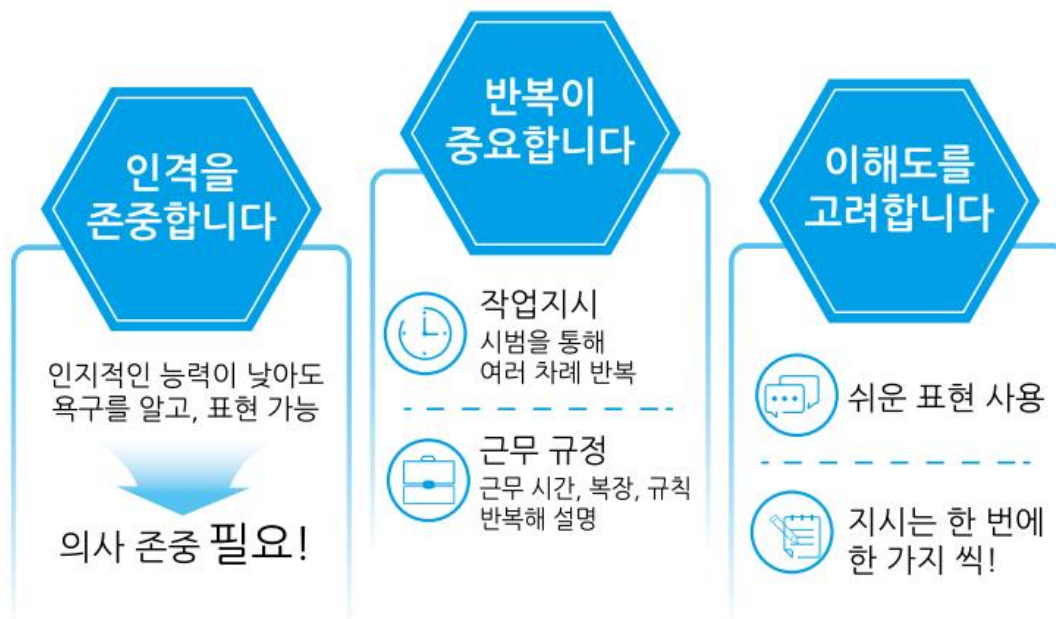
□ 소방안전교육 표준실무(장애인 학습지도안)

차시	주제	주요 학습 내용
1	생활 속 화재안전(원인과 대비)	화재사고 경험 및 동기유발, 주제인식
2	생활 속 화재안전(대처와 진압)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및 동기유발
3	생활 속 응급처치(성인, 영유아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골든타임 중요성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
4	생활 속 응급처치(기도폐쇄)	질식사고 경험 및 동기유발, 주제인식
5	상황별 응급처치(내과적 응급): 저혈당/경련, 뇌졸중, 심장질환	내과적 응급처치의 중요성 인식
6	상황별 응급처치(내과적 응급): 약물중독, 흡입중독	양물중독의 위험성 인식 및 주제인식
7	상황별 응급처치(외과적 응급): 이물질, 출혈, 절단, 화상	다친 경험 및 동기유발
8	상황별 응급처치(외과적 응급): 머리·척추 손상, 치아빠짐, 뺨/코 질	다친 경험 및 동기유발
9	상황별 응급처치(외과적 응급): 온열질환, 추위에 의한 질환	폭염과 한파경험 공유 및 공기유발
10	상황별 응급처치(외과적 응급): 벌쏘임, 해파리자상, 돌물물림/뱀물림	벌에쏘인 경험 공유 및 주제인식

□ 소방안전교육 표준실무(장애유형별 재난취약 특성표)

장애유형		재난 취약 특성
시각장애인		• 시각이라는 감각기능의 상실로 인해 인지상에 많은 착오를 겪고 공간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 • 일상생활 어떤 상황에서든 사건, 사고에 항상 노출됨 •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 눈으로 재해 및 재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음 · 재난 상황 발생 시 많은 소음 발생, 어수선한 주위환경으로 인해 다른 감각을 활용한 이동이 어려움 · 재난 발생으로 대피 시 수평 보행속도는 비장애인의 40~66%, 계단 보행속도는 비장애인의 39~57%
청각장애인		• 기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므로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 •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쓸모없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재난에 대한 초기 인지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보다 재난 대처시간이 오래 걸림 • 화재경보가 울릴 때 대응 취약
지체장애인	휠체어	• 수직이동이 어렵고 이동거리의 제한 •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데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약간의 요철이나 단차에도 통행 어려움 •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는 동작이 어려움
	목발	•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고 넘어지기 쉬움 • 보행능력이 약하고 보행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동하기 어렵고 위험함
뇌병변 장애인		• 재난 발생 시 경증인 경우 비장애인 대피 속도의 85% 수준이며, 중증일 경우 65%수준이며, 휠체어 사용자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경우 이동속도는 비장애인의 92% 수준

□ 소방안전교육 표준실무(장애인 소통방법 및 대피특성)



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특성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의 유형에는 공통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은 있지만, 화재 시 자신의 의지로 이동이 가능한 유형,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유형, 수동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자유로운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유형으로는 평상시 침대나 고정 의자 등에서 생활하며 위기상황 인식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를 대부분 사용하여 자력 대피 불가능한 장애인, 화재 등 비상시에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영상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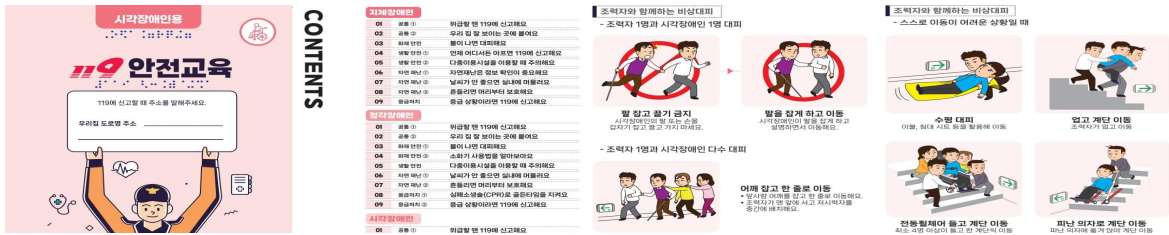
- 4대 교육분야(화재대피·예방, 응급처치, 아파트 화재대피)를 중심, 재난으로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구(自救)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대국민 행동요령 영상교재 개발

－ 취약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원샷한술^{시각장애인})의 화재대피 직접체험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한 정보 전달

※ 대상: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장애), 및 외국인(베트남, 중국, 영어)

□ 119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 재난취약계층(장애인·지체, 시각, 청각)을 대상으로 119신고 및 화재대피요령 등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표준교재 보급('23년)



【시각장애인용점자교재】 【장애유형별 대피방법】 【시각장애 대피방법】 【지체장애 대피방법】

□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 시·공간을 초월한 안전교육 플랫폼 운영으로 신체·환경적 제약 없이 소방안전교육 및 간접체험이 가능하여 국민 편의성 향상
-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추

- * 가 소방관 진급, 아파트, 학교 등 화재발생 시 행동방법, AI챗봇, OX학습평가 등



【비대면 화상교육】 【교육자료 열람】 【안전게임존】 【AI 챗봇】

※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이용실적: 67,597명('23년 31,308명, '24년 36,289명)

□ 장애인 훈련생 소방안전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형 소방안전교육 제공

※ 최근 4년간 추진실적: '21년(1,121명), '22년(2,560명), '23년(2,327명), '24년(2,338명)